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0일
발 의 자: 이은림, 김재진, 김춘곤,
박성연, 박중화, 봉양순,
이민석, 이영실, 이종배,
이희원, 최유희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의 등하교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, 초등학교 주변 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그러나 협소한 도로에 면해 위치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차도와 분리된 통학로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함.
- 이에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관리토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학교용지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 (안 제2조 제8호).
- 나. ‘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’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설치 관리의 지원을 신설함 (안 제6조 제2항 제4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 ,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학교용지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·관리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학교용지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.</u></p>
<p>제6조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6조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·관리 지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030300000002

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이은림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3.03.

회신일 : 2022.03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제2항제4호에서 “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·관리”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제2항제4호에서 “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·관리”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부서 확인 결과,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
e-mail : kjh0123@seoul.go.kr